

제22대

2024. 4.10 실시

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

Examples of Illegal Activity in Overseas Voting of 22th
National Assembly Election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일러두기

- 본 자료는 2024.4.10.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대한민국의 「공직선거법」, 「정당법」, 「정치자금법」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'할 수 없는 사례'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전화 82-2-1390)나 '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nec.go.kr>)→참여마당→정치관계법질의'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용어의 표기

- “후보자”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, “예비후보자”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, “입후보예정자”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.
“공직선거법, 제112조제1항” ⇒ “선거법 §112①”으로 표기

신고·등록신청 방법
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

인터넷(www.nec.go.kr)
Via internet website

신고·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

www.nec.go.kr



공관방문·순회접수
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'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

우편·전자우편
By mail or E-mail

외국당 공관비 문의
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



선거운동 개요

1 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 →

| 선거법 §58, §59 |

- “선거운동”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.
- “선거운동기간”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(2024. 3. 28. ~ 2024. 4. 9.)를 말함.
-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·인터넷홈페이지·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음.

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→

| 선거법 §58 |

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-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·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- 통상적인 정당 활동
- 설날·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오신날·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(그림말·음성·화상·동영상 포함)로 전송하는 행위





국외 선거운동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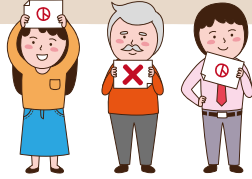
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→

| 선거법 §60 |

- ▶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(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)
- ▶ 선거법 등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(2024. 4. 10)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
- ▶ 국가(지방) 공무원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



그 밖에 선거법 §60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.



4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→

| 선거법 §218의14⑥ |

- ▶ 한국국제협력단 ·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



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.

5 단체의 선거참여 활동 →

| 선거법 §218의14⑦ |

- ▶ 단체(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)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

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→

| 선거법 §59, §218의14 |

- ▶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(선거일 포함)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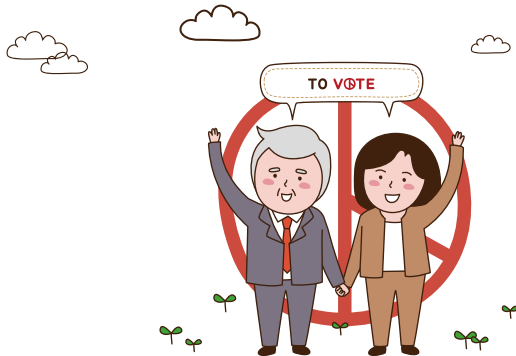
구분	할 수 있는 방법	할 수 없는 방법
문자 메시지	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 정보 전송(그림말 · 음성 · 화상 · 동영상 가능)	예비후보자,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(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)으로 문자메시지 전송
인터넷 홈페이지	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·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	후보자가(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)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
전자우편	전자우편(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· 음성 ·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)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	예비후보자,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

- ▶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(송 ·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,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)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(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)을 할 수 있음.

2 정당·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→

| 선거법 §218의14 |

- ▶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
- ▶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1회 이내의 방송연설 가능
- ▶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)는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가능
- ▶ (예비)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(합하여 총 8회 이내)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
- ▶ (예비)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



3 투표참여 권유활동 →

| 선거법 §58의2 |

○ 할 수 있는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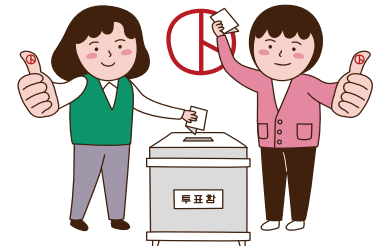
- ▶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법 §59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·후보자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

✕ 할 수 없는 사례

- ▶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
- ▶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
- ▶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성명·사진 또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, 인쇄물, 확장장치·녹음기·녹화기(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), 어깨띠, 표찰,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



재외국민·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

1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명령 등

| 선거법 §218의30 |

▶ 제한 대상

- ▶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
- ▶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로 한정)된 사람

▶ 제한 기간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후 5년 이내(~2029. 4. 10.)

2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

| 선거법 §218의31 |

▶ 입국금지 대상

국외에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

▶ 입국금지 기간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(~2028. 5. 29.)



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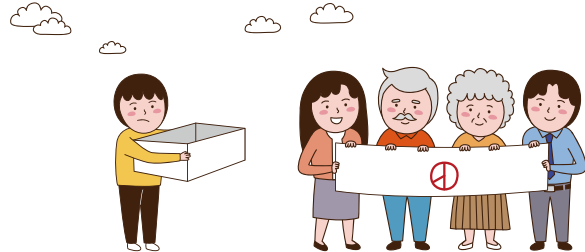


위반행위 사례예시

1 기부행위

☑ 기부행위의 금지

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이나 한인회 등이 정당·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로부터 금품·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.



✖ 할 수 없는 사례

- ▶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·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- ▶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·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,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- ▶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금품·음식물·서적·기념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

2 비방·허위사실 공표


 허위사실의 공표

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“공표”(공연성)의 요건을 충족

 위반행위 조치사례

- ▶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동영상(○○○, 빨갱이야!)을 게재하면서 ○○○에 대한 허위사실(◎◎은 인민군 상차 출신 등)을 공표한 행위
- ▶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를 기초로 하여 ‘○○○와 ◎◎◎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사촌 형부인 ◇◇◇총재가 말했나 보다’등 허위·비방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

 할 수 없는 사례

- ◎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·가족관계·신분·직업·경력 등·재산·행위·소속단체, 특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, 문자메시지·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
- ◎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, 문자메시지·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

3 인쇄물·시설물 이용


 할 수 있는 사례

- ◎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 축전을 재외거주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
- ◎ 행사주최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간담회 개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

 할 수 없는 사례

- ◎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어깨띠 등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◎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·소식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지지·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


 위반행위 조치사례

○○이 2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한인 주택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 1,000부 정도 배부한 행위

4 모임·집회 등 개최



○ 할 수 있는 사례

- ▷ 누구든지 선거와 무관하게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·야유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

✕ 할 수 없는 사례

- 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
- ▷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·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



5 정당활동·정치자금 모금



○ 할 수 있는 사례

- ▷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앙당·국회의원·후보자후원회에 「정치자금법」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
- ▷ 정당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

✕ 할 수 없는 사례

- ▷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



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나, 그 모임의 명칭을 “당원협의회”로 하여서는 아니됨.

- ▷ 재외동포간담회·정책간담회·기자회견·향우회·한인회 행사 등 각종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



정당·국회의원·후보자가 아닌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없음.

- ▷ 특정 단체(한인회·향우회·동창회·친목회 등)가 소속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
- ▷ 외국인 또는 기업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

6 방송·신문 등 이용


 할 수 없는 사례

- ▷ 한인방송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를 지지·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
- ▷ 한인방송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성명·사진·경력·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
- ▷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(창당준비위원회 포함) 또는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·연예·연극·영화·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가 방송·신문·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
- ▷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)의 당락이나 정당(창당준비위원회 포함)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한인신문·기관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·살포·게시·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·살포·게시·첨부하는 행위

 위반행위 조치사례

재외신문에 '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.(중략) 우리 손으로 비꼽시다.(중략)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!'는 내용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

7 재외투표 관련


 할 수 없는 사례

- ▷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를 부탁하는 행위
- ▷ 재외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, 촬영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


 위반행위 조치사례

재외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카페 등 2개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



소통과 화합의 재외선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.

- ▶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재외국민이라도 사안에 따라 여권발급·재발급의 제한 또는 여권반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.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| <http://nec.go.kr> |